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2061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9796 호, 2009. 10. 9. 공포, 2010. 4. 10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부터 제8조까지,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(이하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6조의6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9조제11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30조제16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45조의4제11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 8 제24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정책심의위원회”라 한다. 이 표에서 같다)”를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(이하 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라 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)</u> <p>① 법 제 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정책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·교육과학기술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지식경제부·보건복지기획부·환경부·노동부·국토해양부·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</p>	<u>〈삭 제〉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한다.</u></p> <p>1.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2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3.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</p> <p>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
<p><u>제5조(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)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u></p> <p>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·장기 기본계획</p> <p>2. 산업안전·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</p> 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	<u>〈삭 제〉</u>
<p><u>제6조(전문위원)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·기계안전·</u></p>	<u>〈삭 제〉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전기안전 · 화공안전 · 건축안전 · 토목안전 · 산업의학 · 산업간호 · 산업위생 · 유해물질관리 · 안전 · 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,</u> <u>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.</u></p>	
<p><u>제7조(간사)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<u>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.</u></p>	<u>〈삭 제〉</u>
<p><u>제8조(수당 및 여비)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1.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</u></p> <p><u>2.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</u></p> <p><u>3.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</u></p>	<u>〈삭 제〉</u>
<p><u>제8조의2(전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에서 분야별로</u></p>	<u>〈삭 제〉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중 중요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	
<p><u>제8조의3(의견의 청취)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<p>제26조(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·보건 조치)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”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</p>	<p>제26조(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·보건 조치) ① ----- ----- -----</p>
<p>1. ~ 3.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</p>	<p>4 . ----- ----- ----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(이하 “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-----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6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) 법 제3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	제26조의6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) – ----- ----- --- <u>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</u> --- -----.
제29조(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) 법 제37 조제1항에 따라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9조(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)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	11. ----- <u>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</u> -----
제30조(허가 대상 유해물질)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0조(허가 대상 유해물질) ----- ----- -----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	16. ----- <u>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</u> -----
제45조의4(산재예방사업의 지원) 법 제62조제1 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.	제45조의4(산재예방사업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11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<u>정책심의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	11. ----- -- <u>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</u> -----